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2 선고 2023가단5141555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

담당변호사 정원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

담당변호사 손병기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2. 23.

판 결 선 고 2024. 3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2. 13. 접수 제186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 2. 공시송달에 의한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임상은

별지